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명확히하고 무상보육 실시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반환명령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조금 반환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정 사용한 비용을 포함하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217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보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경력인정 기준을 정비하고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15명”을 “20명”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9조의3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보육교직원 정보
2.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된 보육교직원 정보
3.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 열람제한자 정보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 열람제한자의 가족관계 정보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 또는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9조의3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하 “보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2. 진흥원의 장 :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3.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에 관한 권한

4.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 2) 및 3) 중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를 각각 “시간제 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하고, 같은 목 3) 중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석교사 또는 교사”를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교사”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특수학교 교원으로”를 “특수학교 교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순회강사로”로 한다.

4)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6급(또는 6급에 준함) 이상, 현장평가직으로 근무한 경력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2) 및 3) 중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를 각각

“시간제 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하고, 같은 목 3) 중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수석교사 또는 교사”를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교사”로 한다.

4)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6급(또는 6급에 준함) 이상, 현장평가직으로 근무한 경력
별표 1의2 제1호 중 “보조금을 교부받거나”를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교부받거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 ----- ----- ----- ----- ----- ----- ----- ----- ----- ----- ----- ----- ----- ----- ----- <u>20명</u> ----- -----.
②·③ (생략) <u><신설></u>	②·③ (현행과 같음) <u>제17조(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① 법 제9조의3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37조제1

항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보육교직원 정보

2.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된 보육교직원 정보

3.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 열람제한자 정보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 열람제한자의 가족관계 정보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 또는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9조의3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하 “보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보건복지 부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에게 위임한다. 1. 2.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u>2. 진흥원의 장 : 법 제8조제2 항 각 호의 업무</u> <u>3.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u> <u>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정보시스템의 구 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u>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u>3.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 정·재지정에 관한 권한</u> <u>4.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에 관한 권한</u>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541